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정상회의등”의 범위 명확화 필요(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를 “정상회의등”으로 약칭함.
- 그런데 이에 따르면 “정상회의등”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질 수 있는 점, APEC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하되, 고위관리회의나 분야별 장관회의는 인천, 제주 등 다른 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이어서 “정상회의등”의 범위에 따라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나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도 달라지

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의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최장소별 주요 회의 분산 개최(안)>

개최장소	회의명
경주	정상회의,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최종고위관리회의, 재무차관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
부산	해양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제주	통상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인적자원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제2차 고위관리회의
인천	디지털장관회의, 여성경제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구조개혁장관회의, 제3차 고위관리회의
서울	비공식 고위관리회의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2024. 10. 2.

- 이에 “정상회의등”에서 ‘정상회의’를 제외한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나머지 제반 회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외교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제정안 제2조 “정상회의등” 정의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상회의 관련시설”이라 함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 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부금품 접수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외 필요(안 제8조)

- 제정안 제8조제1항은 APEC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1)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준비기획단의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제행사(순천만정원박람회, 평창올림픽 등)와 동일하게 현행대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1)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이에 외교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부금품 접수주체에서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제정안 제8조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연계 개정 감안 필요(안 제9조)

- 제정안 제9조제1항은 APEC 준비기획단 및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 및 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제1항>

제정안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해당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데, 현재(2024. 11. 26. 기준) 제정안 제9조의 국유재산특례 신설과 관련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제정안 제9조가 실효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나, 개정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은 아님. 다만, 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경

우, 제정안 제3조²⁾는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특별법 제정 관련 기획재정부 의견

-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지지의사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지방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김 성 완)

2)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